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8,862,410	12,865,872
일반회계	400,791,947	12,023,758
특별회계	28,070,463	842,114
공기업특별회계	6,723,711	201,711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723,711	201,711
기타특별회계	21,346,752	640,40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34,258	31,02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11,336	21,34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50,774	199,52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71,103	20,133
수질개선 특별회계	9,829,215	294,876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300,000	39,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12,85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